#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3 행 정 부

# 판 결

2022. 5. 26.2021619사건2023누43763시정명령등취소

원 고 1. 대한변호사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서초 동, 변호사교육문화관)

대표자 회장 김영훈

2.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표자 회장 김정욱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광철, 정수 진, 정병기, 김병규, 공소슬, 최석철

원고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김기원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한기정

소송수행자 박소현, 안광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고세경, 박소은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24.

## 주 문

- 1. 피고가 2023. 4. 13. 전원회의 의결 제2023-063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라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1952. 8. 29. 설립된 단체이다. 2022. 12. 31.자 기준으로 개인회원<sup>1)</sup> 수는 27,732명이고, 2022년도 기준 예산액은 약 574억 원이다.

원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라 한다)는 변호사법 제64조에 따라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1984. 10. 25. 서울특별시 지역에 설립된 단체이다.

<sup>1) &#</sup>x27;개인회원'이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를 말한다.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준회원이 되며, 그 밖에 법인회원[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과 외국회원(외국법자문사) 등이 있다. 이하 같다.

2022. 12. 31.자 기준으로 개인회원 수는 20,893명이고, 2023년도 기준 예산액은 약 294억 원이다.

2) 원고들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 2조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다. 원고들의 주요 회원인 개인회원은 개업변호사인데,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원고 대한변협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위와 같이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변호사법 제68조 제1항). 원고 서울변회의 회원인 변호사는 당연히 원고 대한변협의 회원이 된다.

국내 변호사 수는 2022. 12.말 기준 32,977명인데, 그중 개업변호사는 27,732명, 휴업 또는 미개업 상태의 변호사는 5,245명이고, 개업변호사 27,732명 중 약 75%에 해당하는 20,893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 나. 변호사 제공 법률서비스의 현황

- 1) 변호사업이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을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변호사업의 수입은 크게 ①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 등의 사무보수, ② 착수금 및 성공보수와 같은 사건보 수, ③ 교통비·출장비 등의 실비변상으로 구성되며,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 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대한변협 회칙 제44조).
- 2)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서비스의 가격, 변호사의 전문성 및 친절도 등이 변호사마다 다양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 전에는 그 특성을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법률서비스 시장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정보비대칭 현상은 소비자들의 역선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탐색비용, 비교비용, 협상비용 등 불완전 정보로 인한 거래비용을 높여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3) '리걸테크(Legal Tech) 산업'은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서비스 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

리걸테크는 검색·분석·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① 검색 분야에서는 다양한 법령·판례·논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Legal Research),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Legal Marketplace),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증거를 수집·제공하는 업무를 보조·관리해주는 서비스(e-Discovery) 등이 있고, ② 분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판례 추이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을 수립해주는 서비스(Legal Analytics) 등이 있으며, ③ 작성 분야에서는 자동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Legal Document Automation) 등이 있다(을 제16호증). 리걸테크 산업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에게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광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 나타났다.

#### 다. 로톡의 변호사 광고 운영형태

주식회사 로앤컴퍼니는 2014년부터 '로톡'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www.lawtalk.co.kr)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로톡 서비스(이하 '로톡'이라 한다)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으로, 소비자들에게는 키워드별·지역별·분야별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변호사들에게는 정액의 광고료를 지급받고 소비자들에게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소비자와 변호사 간에 전화, 영상통화, 대면방문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예약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로톡은 이 사건 당시,2) 소비자들이 로톡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에서 '이혼, 상속, 성범죄, 건설·부동산, 재산범죄, 기업일반, 형사 기타' 등의 법률 분야를 선택할 경우 변호사 검색 웹페이지 상단에 우선 노출되도록 해주는 '검색광고(분야광고)', 법률 분야를 기준으로 온라인상에서 답변 글 작성 시 상담사례 페이지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주는 '배너광고(플러스광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변호사를 검색할 경우 변호사 검색 웹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주는 '지역광고' 등 대표적으로 3가지 유형의 광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변호사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정액3)의 광고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변호사 1인이 구매가능한 광고서비스의 수에는 제한이 없었다.

로톡은 소속 직원인 매니저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를 관리하면서 특정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추천하거나 상담을 권유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로톡 매니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소비자들이 형사사건의 범죄유형,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범죄유형에 대해 가장 많이 선고된 순으로 3개의 형량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형량예측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위 형량예측 서비스는 2021. 9. 30.자로 중단되었다.

### 라. 원고들의 행위 등

### 1) 원고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등

원고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구성사업

<sup>2) &#</sup>x27;이 사건 당시'는 구체적인 시점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피고가 원고들의 위반행위 기간으로 명시한 '2021. 5.부터 2023. 2.까지'를 지칭한다.

<sup>3)</sup> 당시 로톡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클릭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책정하는 CPC(Cost Per Click) 방식이 아닌, 일정 기간 노출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CPP(Cost Per Period) 또는 CPT(Cost Per Time)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자들이 협조하지 않도록 규제한다.'는 취지하에, 2021. 5. 3.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명칭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변협규정 제4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광고규정'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고, 2021. 5. 31.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였다.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은 2021. 5. 4., 이 사건 광고규정은 2021. 8. 4.,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은 2021. 6. 1.에 각각 시행되었으며, 법질서 위반감독센터는 2021. 7. 19. 설치되었다. 위 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3 변호사 광고관련 규정 내용(발췌)'과 같다.

원고 대한변협은 2021. 8. 11. 로톡에 가입한 1,440명의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법 및이 사건 광고규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후 2021. 9. 7., 같은 달 16. 및 2021. 10. 1.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소명서 및 탈퇴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재차 요구하면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21. 10. 5.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2021. 10. 7.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약 220명의 변호사들을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였다. 원고 대한변협이 당시 변호사들에게 발송한 공문 및 특별조사위원회 발족과 관련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별지4-1 기재와 같다.

## 2) 원고 서울변회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탈퇴 요청

원고 서울변회는 2021. 2.경부터 2021. 4.경까지 로톡에 대하여 서비스운영 중단을 요청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로톡 광고사들에 대하여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 서울변회는 2021. 5. 27. 모든 회원을 대상으

로, 2021. 8. 4.자로 시행될 예정인 이 사건 광고규정의 준수를 당부하고 위 광고규정의 위반소지가 있는 로톡, 로앤굿, 로시컴 등과 같은 온라인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탈퇴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광고규정의 내용에 부합하게 '변호사업무 광고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후 2021. 7. 9.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다. 원고 서울변회가 2021. 5. 27. 및 2021. 7. 9. 발송한 위 각 공문의 주요 내용은 별지4-2 기재와 같다.

## 3) 법무부의 유권해석 및 검찰의 불기소 결정

법무부는 2021. 8. 24.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하는 바와같이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로톡과 같은 온라인법률플랫폼이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법무부는 변호사단체 등이 우려를 표한 제반사항을 로톡 운영사인 주식회사 로앤컴퍼니 측에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검찰은 로톡의 운영방식이 특정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받는 등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법무부의 유권해석(플랫폼 운영 법인의 변호사 관련 정보 제공 등은 광고로서 특정 변호사 등의 소개·알선·유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및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광고료의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변호사의 소개 및 상담과정이 동일하고, 사용자의 상담료는 해당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됨) 등을 고려하여, 로톡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mark>2022. 5. 11. 불기소결정</mark>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 10670호).

## 4) 헌법재판소의 결정

원고들 소속 회원인 변호사 60명 등은, 변호사 광고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를 포함하여, 광고내용을 제한하는 이 사건 광고규정 제4조 제14호 및 법률상담 광고에 관한 이 사건 광고규정 제8조 제2항 제4호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이 사건 광고규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을 긍정하는 한편, 이 사건 광고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마619 결정, 이하 '이 사건 헌재 결정'이라 한다. 별표5 참조).

## 5) 원고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 및 징계절차 진행

원고 대한변협은 2022. 10. 11. 이 사건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이 사건 광고규정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광고 규정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된 광고규정을 '이 사건 개정광고규정'이라 한다). 원고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2. 10.경부터 2023. 2.경까지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광고규정<sup>4)</sup> 위반 등을 이유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해당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는, ①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이 사건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 ② 로톡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였으며 (이 사건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위반), ③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이고(이 사건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 위반), ④ 변호사의 법률상담 게시판 답변 글 게재 행위가 로톡의 영업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광고규정 제8조 제2항 제3호 위반), 변호사 123명의 로톡 이용은 이 사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징계 혐의사실에 대하여 과대료 부과, 견책 등을 결정하였다.

### 6)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

원고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은 변호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2022. 12.경부터 2023. 4.경까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법무부징계위원회는 2023. 9. 26. 위 5)항 중 ①, ④ 쟁점의 경우 이 사건 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②, ③ 쟁점의 경우 이 사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징계받은 변호사들 중 120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법원 판결 등의 결과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해당 서비스가 2021. 9. 30.자로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하지

<sup>4)</sup> 이 사건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u>'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과 같이 헌법재판소에</u>서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은 징계의 근거규정에서 제외되었다(갑 제2호증).

않기로 결정(불문경고) 하였다.

한편, 법무부장계위원회는 위 ① 쟁점의 경우 이 사건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로톡이 변호사에 특화된 단일 직역 플랫폼으로 광고를 함에 있어 일반인 시각에서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되도록 하는 점, 로톡검색 시 '변호사 연결'등 문구가 표시되는 점 등을 들어, 로톡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장계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은 별지6 기재와같다.

## 마. 피고의 처분

- 1) 피고는 2023. 4. 13. 전원회의 의결 제2023-063호로 위 라.항 중 1), 2) 및 5)항과 같은 원고들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자 '법령에 따르지 않고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원고들이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별지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각 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
- 2)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별표 6] 및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 8. 28. 공정거래위원회 제20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1,000,000,000원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

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구 과징금고시 II. 9.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뜻하는데, 위반행위 종료일이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에 따른다. 원고들의 위반행위가 심의일(2023. 2. 15.)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연간예산액을 정하되, 원고 대한변협의 경우 당시 2023년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2022년도 예산액에 의한다. 원고 대한변협의 연간예산액은 2022년도 기준으로 57,451,000,000원이고, 원고 서울변회는 2023년도 기준으로 29,433,000,000원이 된다.

원고들은 개업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 또는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구성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들의 적극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금지행위는 변호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변호사 선택권도 크게 제 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구 과징금고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 대한변협의 경우 그 영향력이 전국에 미치므로 1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 하고, 원고 서울변회는 그 영향력이 서울지역에 한정되므로 1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 용한다[구 과징금고시 IV. 1. 라. 2) 가)].

원고들의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원고 대한변협의 산정기준은 74,686,300,000원(=57,451,000,000원×130%), 원고 서울변회의 산정기준은 32,376,300,000원(=29,433,000,000원×110%)이다.

나)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원고들의 행위는 2021. 5.부터 2023. 2.까지 지속되었으므로 구 과징금고시 IV. 2. 가. 2)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원고 대한변협의 경우, 85,889,245,000원 (=74,686,300,000원×115%), 원고 서울변회의 경우 37,232,745,000원(=32,376,300,000원×115%)이다. 2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부과과징금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원고 대한변협의 경우 85,889,000,000원, 원고 서울변회의 경우 37,232,000,000원이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1,000,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한도액인 1,000,000,000원을 각각 부과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 내지 13호증, 을 제10 내지 25, 130,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원고 대한변협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4항, 제92조, 제92조의2 등에 근거하여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에 대하여 규제 및 징계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 서울변회도 변호사법 제39조, 제64조 제1항에 따라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6조, 표시광고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2)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 부존재

원고 대한변협이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아가게 된 목적과 경위, 징계의정도, 그로 인한 효과 및 로톡의 사업모델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행위는 변호사법 및 이 사건 광고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고, 과잉제한 내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부당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광고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이 사건 시정명령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원고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및 이 사건 광고규정에 위배되는 변호사 광고를 제재할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는다. 이 사건 시정명령은 원고들이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어떤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4)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가) 변호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원고 대한변협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법률사무에 요구되는 전 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상한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의 통상적인 활동과 무관한 특별회계 금액이 포함된 연

간예산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특히 원고 서울변회의 2021. 5. 27.자 및 2021. 7. 9.자 공문발송은 2021. 8. 4. 시행예정이었던 이 사건 광고규정의 내용을 소개하는 등 강제성이 없는 행위이고, 원고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제97조의2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 권한만 가지므로,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원고 서울변회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원고 서울변회의 행위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공문발송은 원고대한변협의 행위를 단순히 보조하여 이 사건 광고규정의 준수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 서울변회에 대하여 원고 대한변협과 동일한 1,00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7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등

(1)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

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13412 판결 등 참조).

(2)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하고(제1조),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본문). 다만예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 제1항 단서).

##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광고규정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원고들은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규정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한 후 징계절차에 나아갔으므로, 비록결과적으로 원고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달리 원고들에게 온라인 법률플랫폼 자체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다만,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구성사업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 있다.

### (1)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변호사 광고의 한계

변호사법은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한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고 선언하면서(제1조, 제2조),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제4조 내지 제20조),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처리의무 등의 각종 의무를 부과하며(제24조 내지 제27조 등), 광고 제한,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수임 제한, 겸직 제한 등의 규제를 하는 등(제23조, 제29조 내지 제35조, 제38조 등) 변호사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있다'고 규정하여(제23조 제1항), 원칙적으로 변호사등이 각종 매체를 통하여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와 같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일정한 광고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금지하는 한편(제2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원고 대

한변협이 정하여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제7호).

즉,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의 구성사업자인 변호사에게 광고를 통한 자유경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변호사직역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위 경쟁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법상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전문성 및 공공성과함께 세부적인 변호사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의 변화와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대한변협에게는 변호사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에 대하여 변호사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 (2) 원고 대한변협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의 적정성

원고 서울변회는 원고 대한변협과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면서(변호사법 제77조제1항), 소속 변호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등 감독권을 갖는다(변호사법 제39조, 제64조 제1항).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원고 대한변협의회칙을 지켜야 하는데(변호사법 제25조), 원고 대한변협의 회칙 제44조 제5항은 '모든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이 사건 광고규정이나 개정광고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고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그 준수를 요구하는 등 변호사 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 대한변협은 이 사건 광고규정 등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혐

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92조의2, 제95조).

원고 대한변협은 2021. 5.경 '변호사가 아닌 온라인 법률플랫폼이 소비자들에게 특정 한 변호사를 <mark>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등</mark> 변호사법 제34조 제1 항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변호사법 제23 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광고규정을 포함하여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였다. 비록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2. 5. 26. 이 사건 광고규정 중 일부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소속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 사건 헌재 결정이 있었으나, 원고 대한변협에게는 소속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광고규정이 다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광고규정에 의 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헌재 결정에서 확인된 일부 위헌적인 규정의 존재만으로 원고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한 행 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대한변협이 소 속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의 위헌적 요소가 이미 밝혀진 사후인 시 점에서 그때까지 드러난 자료를 토대로 잘못을 추적해 가는 사후적인 고찰방법에 의하 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3) 원고들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원고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원고 대한변협에 의한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 있기 전인 2021.

2.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로톡이나 로톡 광고사들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 여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의 내용 및 발송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변호사직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피고도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원고 서울변회의 행위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원고 서울변회는 이 사건 광고규정을 비롯하여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이 정비된 이후에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소속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 광고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통지하고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법률서비스 제공이 문제되는 주요 온라인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2차례(① 2021. 5. 27., ② 2021. 7. 9.) 발송하였다.

원고 대한변협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4차례(① 2021. 8. 11., ② 2021. 9. 7., ③ 2021. 9. 16., ④ 2021. 10. 1.)에 걸쳐 온라인 법률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광고규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소명서 및 탈퇴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원고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변호사법 제92조의2), 위 각 공문을 발송한이후인 2021. 10. 5.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징계를 예고하였다. 원고 대한변협은 징계혐의자에게 특별변호인의 선임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였고, 징계 근거 조항 및 징계 사유를 제시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징계결정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원고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의제·개정이나 징계 결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원고 대한변협이 정한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

록 통지하고 이 사건 광고규정 등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 원고 대한변협은 이에 따르지 않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들이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당시 로톡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중 위법성이 명백한 일부 서비스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로톡에 대하여 온라인 법률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당초 소속 변호사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갖고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불기소결정이나 이 사건 현재결정, 법무부징계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 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명확성 문제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인정되므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공적 규제가 불가피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고 대한변협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대한변협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법무부장관은 원고 대한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한다(변호사법 제86조).

이 사건 당시 로톡이 제공했던 서비스 중 '인공지능 형량예측 서비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로톡이 스스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 또한 법무부징계위원회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로톡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별지6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단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불기소결정이나 이 사건 현재결정, 법무부징계위원회결정에 따라 로톡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과 같은 변호사법 위반혐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뿐, 원고들이 사업자단체로서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어떤 방법으로 감독권을 행사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변호사법 제39조에따른 적정한 감독권 행사의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인 ①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행위, ② 온라인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하도록 요구하면서 소명서 및 탈퇴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③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행위 중에서 변호사법에 규정된 내용을 일탈하여 구성사업자를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가 무엇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 (5)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의 문제

(개) 이에 대하여 피고는, 로톡의 일부 광고문구가 문제된다면 광고 문구를 조정하면 되고, 로톡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는 없으므로, 로톡에게 시정요구를 하거나 구성변호사들이 자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충분한데도, 원고들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보유할 뿐, 변호

사가 아닌 로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로톡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그 운영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권한 밖의 행위이다. 나아가 로톡은 변호사들로 하여금 로톡이 제공하는 광고 상품(분야광고·플러스광고·지역광고) 중 일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는 하나, 원고 대한변협이나 법무부가 로톡 운영이 이 사건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그 예로 든 ① 온·오프라인에서 '법률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 '법률문제는 로톡에서 물어보세요'와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② 소비자에게 변호사 상담비용할인 쿠폰을 온·오프라인에서 발행·배포한 행위, ③ 로톡 소속 직원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로톡 매니저'서비스 등은 로톡 플랫폼 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자 로톡 사업모델 그 자체이므로, 개인회원인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하면서 이를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로톡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없는 원고들로서는 변호사들에게 로톡 서비스탈퇴 요청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광고규정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변호사들은 로톡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법 및 이 사건 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포털서비스와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광고 내지 홍보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 로톡을 대체하는 광고 수단이 존재했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로톡 서비스가 개시된 2014.경부터 질의회신 과정에서 이미 '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으면서도, 2021. 5.경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이를 이용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탈퇴

요청 등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대한변협은 '의뢰인이나 변호사가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회원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정보이용료나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에 위반 될 소지가 있다.'고 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수임이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또한, 종래 질의회신 당시 이루어졌던 로톡의 온라인 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 및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어떤 명목으로도 로톡에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로톡을 통해 선택한 변호사와 상담한 비용은 결제 대행회사에 귀속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 변호사에게 귀속되며, 다만 광고를 원하는 변호사는 로톡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이었던 반면, 이 사건 로톡의 온라인 법률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광고비를 많이내고 후기 등을 많이 축적한 변호사의 경우 플랫폼 내 노출 위치 및 횟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구조였고, 로톡 소속 직원인 매니저가 로톡에 가입한특정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추천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서비스,5) 소비자들이 형사사건에 대한 범죄유형, 가중요소, 감정요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로톡이 예측형량정보를 제공한 후 소비자가 변호사와 상담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의 온라인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행위,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고 이

<sup>5)</sup>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 당시 이 부분 '로톡 매니저' 서비스는 폐지된 상태였다.

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징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mark>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 제한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mark>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 부존재

- (1)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등 참조).
- (2) 위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행위에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개) 원고들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 것일 뿐,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여 이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이윤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
- (J) 원고들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규정 시행 전에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로톡에 대한 관계에서 서비스 이

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원고들로서는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탈퇴 요청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보인다.

(i) 원고들이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았으므로, 온라인 법률플랫폼 중 일부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법률서비스에 품질저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변호사 직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이를 저해하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고, 변호사법에서도 변호사 광고에 관한 심사나 이로 인한 경쟁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구성사업자인 변호사가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는 등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광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심사를 하거나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필연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

나아가 최근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원고들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광고규정 제정부터 징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로톡은 당초 제공하던 서비스 중에 일부 서비스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폐지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업자단체인 원고들이 구성사업자에게 심사나 징계권을 잘못 행사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 ???????????????????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규율하게 된다면,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와 그 구성사업자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이 되고, 피고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일반감독기관이 된다. 이러한 해석은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피고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시정명령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은 명확성·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변호사법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광고규정이나 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 방법 내지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시정명령은 특별한 조건을 부가하 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로톡을 포함한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 이 용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상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플랫폼만을 의미하므로 원고들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로톡도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표방하며 나온 사업모델로, 로톡의 사업모델이 이 사건 광고규정 내지 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원고 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왔고, 이 사건 시정명령 내지 의결서 기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시정명령상의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플랫폼만을 의미한다고 파악하기도 어렵다.

시정명령의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명령은 금지되어야 하는 이용제한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6)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과 같은 정도의 추상적인 기재는 원고들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3) 피고는, 설령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이 변호사법 내지 이 사건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원고들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의뢰만을 규제할 수있을 뿐, 법률플랫폼 서비스 자체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 개인이 법률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플랫폼의 사업모델 자체가 변호사법 및 이 사건 광고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법률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권한을 갖지 않는 원고들로서는 법률서비스의 이용자체를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 른 대안을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sup>6)</sup>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행위는 ①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행위, ② 온라인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하도록 요구하면서 소명서 및 탈퇴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③ 조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만 으로는 위 각 행위들이 각각 이 사건 시정명령상의 '이용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

## 다)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 (1)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과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등 참조).
-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변호사 직역은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행위는 법률사무에 요구되는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수호하기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의 재정은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의분담금, 특별회비 및 등록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대한변협 회칙 제9조 제2항, 제52조, 서울변회 회칙 제12조 제2항, 제51조), 원고들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의 부과는 결국 그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의 부담이 되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사유가 된다고 본 원고 서울변회의 각 공문발송행위는,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공문발송을 하며 징계 결정까지 나아간 원고 대한변협과 비교해보면 그 행위태양이경미한 것은 분명함에도 원고 서울변회에 원고 대한변협과 동일한 액수인 과징금 1,000,000,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한 점, ④ 헌법재

판소는 이 사건 광고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는 로톡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내용이 이 사건 헌재 결정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개정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숙고를 거쳐 구체적으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보다 경미한 수준의 시정권고 등과 같은 조치 내지 과징금의 감경을 검토하지 않은 채,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각각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과징금의 상한인 10억 원의 부과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의 행위에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시정명령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결국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준영

판사 김형진

판사 박영욱

별지1

##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7)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13. 전원회의 의결 제2023-063호)

- 1. 원고들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 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원고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2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원고들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한변호사협회 : 1,000,000,000원

2) 서울지방변호사회 : 1,0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끝.

<sup>7)</sup> 피고는 원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소지, 주문 제2항의 법령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2023. 5. 3. 전원회의 결정 제2023-11호로 이를 정정하였다.

별지2

## 통지 문안 (원고 대한변호사협회)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 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23 - 063호, 2023. 4. 13.)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ㅇ ㅇ ㅇ (인)

## 통지 문안 (원고 서울지방변호사회)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 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23 - 063 호, 2023. 4. 13.)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업내용 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년 월 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ㅇ ㅇ ㅇ (인)

끝.

별지3

##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 내용(발췌)

#### ■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제1조(목적) … (전략) … <u>본 규정은 건전하고 건강한 수임질서를 정착시키고, 법률플랫폼 서</u> <u>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에 의한 불법적 법률시장 교란행위 및 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u> <u>직역 침탈행위를 조사하고 감독관리하며</u>,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질서위반 감독센 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변협규정 제44호로 전부개정된 것) <개정이유>

현행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르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변호사등')은 변호사 업무에 대해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u>비변호사의 광고에 대해서는</u> 명확한 금지 규정이 미흡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였음.… (중략) … 많은 시간이 경과한지금 특히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채,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등 명목으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받고, 이를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로펌으로 진화하고 있음. … (중략) …범람하는 시종 법률 플랫폼들이 변호사법을 비롯한각종 법령을 위반하면서도 논란을 회피하고자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광고 차원이 아닌 변호사의 이미지 광고, 또는 무료 또는 덤핑의 법률사무를 표방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이를 통해변호사를 알선하는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음. 협회는 … (중략) … <u>법률 플랫폼</u> 사업자와 외부자본, 기타 실체가 없는 영리 목적 광고업자에 의한 변호사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실효성 있는 규정(예컨대 법률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음. … (후략) …

## 제3조[광고의 주체]

② 변호사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비(非)변호사, 개인·단체, 사업자 등(이하 "타인"이라한다)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하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광고내용 등의 제한) 변호사 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 12.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
- 13.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
- 14. 기타 법령, 변호사 윤리장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 및 지방회의 회칙이나 규정(이하 "회규")에 위반되거나.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 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 2.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 3.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 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 4.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변호사등의 수임료 내지 보수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견적·비교·입찰 서비스 등을 취급·제공하는 행위
- 5.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변호사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
- 6.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협회 및 지방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광고행위

#### 제8조(법률상담 광고)

- ① 변호사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② 변호사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사업구조를 갖는 타인에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변호사등 또는 소비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금전·기타 경제적 이익(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3. 타인의 영업 또는 홍보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규,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 ■ 변호사윤리장전

#### <개정 이유>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변호사 수의 급증은 법조시장의 수임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채,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등 명목으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받고, 이를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소개・알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로펌으로 진화하고 있음. … (중략) … 개별 변호사들이 덤핑 광고, 저가 수임경쟁에 내몰린다면 결국 변호사 업계가 붕괴될 변호사들은 생존과 생계의 공포 때문에 무리한 업무 수행을 할 수밖에 없음. 이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임을 명시하고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부여한 것과도 배치됨. 이에 본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제안함.

#### 제31조(원칙)

④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 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끝.

# 별지4-1

# 대한변협이 발송한 공문 및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차 공문 (2021.8.11.)	2.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합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 회원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다 음 -  가. 공통혐의 ○ 변호사법 위반 플랫폼 서비스 이용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로톡의 이름으로 탈법적으로 시행  나. 일부혐의 ○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낚시성 광고 ○ ㈜로앤컴퍼니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투자 사기 공모 ○ 변호사의 이름을 걸어두고 사무장이 법률상담 진행  3.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규정 제8조[업무 처리] 제1항에 따라 귀 회원의 소명과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니, 2021. 8. 25.(수)까지 붙임에 따른 소명서를 작성하여 협회(policy @koreanbar.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② 로톡 가입 경위 ③ 로톡 가입연월일 20  ③ 로톡을 탈퇴하였을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 일제			
2차 공문 (2021.9.7.)	3. 센터로 진정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회원의 소명과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드리니, 2021. 9. 24. (금)까지 붙임에 따른 소명서를 작성하여 이메일(policy@koreanbar.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일인 2021. 8. 5. 이전 또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률 플랫폼(로톡)에서 회원 탈퇴를 하신 분들은 그 탈퇴 여부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일자까지 탈퇴(확인)서 및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오니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차 공문 (2021.9.16.)	3. 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는 귀 회원에게 1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귀 회원께서는 소명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센터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귀 회원은 현재까지도 법률 플랫폼(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바, 법질서위반 감독센터규정 제8조(업무 처리)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니, 2021. 9. 30.(목)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소명서를 작성하여 이메일(policy@koreanbar.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일자까지 탈퇴(확인)서 및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규정 제8조(업무 처리)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오니 이를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차 공문 (2021.10.1.)	3. 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는 귀 회원에게 1차 소명자료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귀 회원께서는 소명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센터에서 파악하기로, 귀 회원은 현재까지도 법률 플랫폼(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바, 법질서위반 감독센터규정 제8조(업무처리)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청드리니. 2021. 10. 15.(금)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소명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policy@koreanbar.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일자까지 탈퇴(확인)서 및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규정 제8조(업무처리)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오니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1.10.7.)	특조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회원들의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은 현재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잔류 회원 220여 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센터장 오해균)에 최초 접수된 진정 대상자는 1,440명이었으며 두 차례 소명 요구에 1,200여 명의 회원이 플랫폼 탈퇴 등으로 변협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변협은 거듭된 규정 준수 요청에도 무응답·미탈퇴로 일관한 잔존 회원에 대하여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서울변회가 발송한 공문(2차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차 공문 (2021.5.27.)	5. 이에 우리 회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맞게 우리 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위 규정 시행일인 2021. 8. 4.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위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광고업체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는 로톡 등 플랫폼과 달리 변호사 본인이 광고의 주체로서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의 이름. 전문분야, 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는 것은 위 규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허용되니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요 법률플랫폼 탈퇴 절차  으로톡 앱 또는 웹(https://www.lawtalk.co.kr) 로그인 -> [매니저(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회원탈퇴] 으로톡 고객센터(02-6959-5080)에 전화하여 탈퇴 신청으로앤굿 웹(https://www.lawandgood.com) 접속 -> 오른쪽 하단의 고객센터 채널톡 클릭 -> 새 대화 시작 -> 회원탈퇴 신청으로앤굿 고객센터(02-6953-3774)에 전화하여 탈퇴 신청으로앤굿 고객센터(02-6953-3774)에 전화하여 탈퇴 신청으로 건지점 웹(http://www.lawsee.com) 접속 -> [고객센터] -> [문의하기] -> 회원탈퇴 신청		
2차 공문 (2021.7.9.)	변호사 소개 플랫폼 탈퇴를 요청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입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와 14개 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월 21일 '법률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해 영리화하고 나아가 법률 가들을 예속화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u>자주 제기되는 질의들에 대하여 답변</u> 드리고, <u>변호사 소개 플랫폼 탈퇴를 요청</u> 드리고자 합니다.		

## 별지5

#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조문과 결정의 요지

#### 【심판대상조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4조 제12호, 제13호,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부분

#### 【결정요지】

가. 변협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나아가, 변협의 구성원인 변호사등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게되면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바, 이 사건 규정이 단순히 변협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인성질을 지니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수권법률인 변호사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인 이 사건 규정은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나. (중략)

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이 사건 광고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범자인 변호사는 유권해석을 통해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수권법률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

해한다.

- 라. 대가수수 직접 연결 금지규정(이 사건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과 제8조 제2항 제2호)은 법률상담이나 사건에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따라서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가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연결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직접 연결을 전제로 한 위규정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마.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사건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부분)의 규율 대상은 이 사건 규정의 수범자인 변호사이고, 규제 대상이되는 상대방의 행위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이다. 위 규정이 규제하는 광고·홍보·소개행위의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을 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특정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광고·홍보·소개행위의 목적이 소비자를 설득하여구매를 유도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단순히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행위를 다시 한 번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소개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 따라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변호사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변호사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들에 의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규정으로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반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별지6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 내용(발췌)

####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 가. 「광고규정」 개정 등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 하자없음
- O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면,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 과정에 절차 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에 대한 제한을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한변협 회칙은 광고에 관한 제한을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광고규정」이 상위법령인 변호사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음(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 참조)
- ② 또한, 대한변협의 징계 조사 등 절차에서 징계 대상 변호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 점 등에 비추어,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 여부): 혐의없음
- ② 본 조항과 관련한 쟁점은 로톡의 운영 방식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 인지 또는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면,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에 따라 징계 대상 변호사의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로톡은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로톡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는 점
- ▶ 광고비를 지급하여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랜덤)로 이루어지는 점
- ▶ 소비자가 로톡에서 노출되는 변호사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는 점
- ▶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의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하지 아니하는 점
- ▶ 변호사 목록 상단에 '광고' 표시가 되어 있는 점 등
- 다만,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면 로톡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① 로톡은 변호사에 특화된 단일 직역 플랫폼으로, 변호사 광고비 구간이 과도하게 넓고(0원부터 최대 월 2,750만 원까지), ② 유료회원 변호사를 'Active Lawyers'(적극적인·활동적인변호사), 'Plus Lawyers'(플러스가 되는·이점이 있는 변호사)로 표시하며, ③ 광고비를 낸 모든 변호사를 목록 상단에 우선 노출하고 있음에도(광고비를 낸 변호사가 많을수록 광고비를 내지 않은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사실상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광고' 표시는 최상단에 한번만 표시하여, 일반인 시각에서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가 플랫폼 내 입지를 선점하여사건 수임 기회가 편중될 우려가 있는 구조인 점
- ➤ 종합검색포털사이트에 '로톡'을 검색하면 '변호사 연결'등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거나 로톡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등에 '변호사님과 의뢰인을 연결합니다'등으로 표시하고, 변호사 프로필 관리 화면에서 050 번호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점, 변호사 정보에 변호사 사무소의 홈페이지 주소(URL)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정책을 운영중인 점
- ▶ 로톡 소속 직원인 '로톡 매니저'가 로톡에 가입한 특정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추천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점(현재는 서비스 폐지) 등
- ※ 반면, 종합검색포털사이트는 ① 변호사 정보 외 모든 영역의 정보 및 광고를 제공하고, ② 소비자는 변호사가 설정한 홈페이지·블로그 링크 등으로도 접속하여 변호사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며, ③ 종합검색포털사이트 자체적으로 특정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추천하지 아니하고, ④ 각 광고 영역별로 '광고'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는 등(광고비 낸 변호사에 대한 가치평가적 표시없음) 로톡과 차이 있음
- 다.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혐의없음
- 본 조항과 관련한 쟁점은 로톡의 운영 방식이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제휴 또는 이해관계' 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냈는지'여부입니다.
-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로톡의 광고 및 운영 방식에 더하여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와 관련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냈으므로, 「광고규정」에 위반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온·오프라인에서 '법률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 '법률문제는 로톡에 물어보세요', '15분만에 사건 진단 로톡'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종합검색포털사이트에 '로톡'을 검색하면 '변호사 연결', '법률상담 안내'등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였으며, 로톡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등에 '변호사님과 의뢰인을 연결', '사건 진단',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표시
- ▶ 소비자에게 변호사와의 상담비용을 할인해 준다는 온·오프라인 쿠폰을 발행 후 법원 인근 등 공공장소에서 이를 배포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광고 지원
- ▶ 로톡 소속 직원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로톡 매니저'서비스(현재 서비스 폐지) 및 형량예측 서비스 운영(소비자들이 형사사건에 대한 범죄 유형,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로톡이 예측형량 정보를 제공한 후, 소비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서비스, 현재 서비스 폐지) 등
- 그러나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면, 징계 대상 변호사에 대하여는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21. 8.) 및 검찰 결정('22. 5.)이 있었던 점
- ▶ 「광고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21. 5.~'22. 5.) 등

# 라.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 3명 불문경고, 120명 혐의없음

- 본 조항과 관련한 쟁점은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20. 11. 개시, '21. 9. 30. 종료)가 단순히 '통계수치를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 O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여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이에, 「광고규정」 시행일('21. 8. 5.) 이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3명에 대하

여는 혐의가 인정되나,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여 엄중히 경고하되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불문경고) 하였습니다.

- ▶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 중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 ▶ 로톡이 형량예측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 향후 재발가능성이 낮은 점 등
- 또한, 나머지 변호사 120명에 대하여는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면,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형량예측 서비스가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기간인 2개월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이상, 로톡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로톡의 위 서비스 제공 행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마. 대상 변호사의 로톡 법률상담 게시판 답변글 게재 행위가 로톡의 영업의 일환에 해당하는 지(「광고규정」 제8조 제2항 제3호): 혐의없음

- 본 조항과 관련한 쟁점은 변호사가 로톡 사이트 내 법률상담 게시판에 답변글을 게재한 것이 '로톡의 영업의 일환'인지 또는 '변호사 본인의 영업의 일환'인지 여부입니다.
- ②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면, 징계 대상 변호사가 로톡 내 법률상담 게시 판에 답변글을 게재한 것은 「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징계 대상 변호 사의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변호사가 법률상담 게시판에 답변글을 게재하는 것은 변호사 자신의 홍보 또는 영업의 일 환으로 보아야 하는 점
- ▶ 로톡은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글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점
- ▶ 로톡 홈페이지상에 로톡이 아닌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면책 조항을 게시하고 있는 점
- ▶ 위와 같은 법률상담 게시판은 종합검색포털사이트 등에서 이미 보편화된 점.

# 관계 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 제5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3조(과징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 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02조(과징금 부과)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되는 회사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 사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 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 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규약 등의 변경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제38조·제43조·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 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 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 등	나) 사업자단체	법 제53조	10억원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종료
	금지행위	제1항	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의 연간
			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10억원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
			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 ■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 8. 28. 공정거래위원회 제20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II. 정의
- 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 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 라.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신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05% 이상 1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이만	10%

#### 2. 1차 조정

다음 가. 및 나.에서 정한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 변호사법

#### 제1조(변호사의 사명)

-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광고)

-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 고
-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 회를 둔다.
-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 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제64조(목적 및 설립)

-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68조(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 제77조(감독)

-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 제78조(목적 및 설립)

-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86조(감독)

-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1조(징계 사유)

-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목적)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 2.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 3.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 6.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 7.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와 감독
- 8.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제3조(구성)
- ① 이 회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
- ②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 제9조(회원의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회원은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분담금, 특별회비 및 등록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4조(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 ③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삭제> (2000. 7. 19.)
-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재원)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1.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 2. 특별회비
- 3. 등록료
- 4. 찬조금
- 5. 기타 수입금

####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 제12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및 규정이나 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한 월회비, 경유회비 및 특별 회비를 부담한다.

제51조(재원)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입회금
- 3. 찬조금
- 4. 기타 수입금